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26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6월 12일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회 식

나. 제안이유

-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사용료 감면 혜택 추가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육·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안 별표3)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정 은

○ 본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임.

○ 검토 결과,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용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여가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체육·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기존 2시간 적용하던 이용료 산정기준을 1시간으로 변경한 위탁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고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법령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